

보도 시점 2026. 5. 31.(일) 12:00 배포 2026. 5. 31.(일) 10:00

“유튜브 절세 꿀팁 믿어도 될까?”

국세청, 「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」 배포

- ‘가족 간 송금·차용증, 부모님 카드 등’ 국민 관심 생활밀착형 주제 안내
- 유튜브·SNS 정보 중 자주 발생하는 세금 오해를 알기 쉽게 설명

1 추진 배경
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·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「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」 자료를 5월 31일(일) 배포한다.
- 최근 부동산·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·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-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·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, 일부는 ‘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’, ‘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?’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.
- 이에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주제를 골라 정확한 기준을 쉽게 안내하고,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료를 기획하였다.
- 아울러 관심도가 높은 주제는 1분 내외 단편 영상(숏폼)으로도 제작하여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.

2 국민 관심 주제 선정

- 국세청은 자료 기획단계에서 국민참여단(144명)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 - 조사 결과, 응답자 다수는 상속·증여세 정보를 유튜브·SNS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으며,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‘팩트체크’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.
 - 국민참여단은 ‘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’, ‘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’, ‘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’ 등 일상에서의 다양한 궁금증을 제시하였다.
 - 또한 어려운 세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, 단편 영상 등 친숙한 방식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.
- 국세청은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이 궁금해하는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하여 자료에 담았다.

Ⅰ 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: 주제 Ⅰ

	주제	주요 오해들
1	생활비	▶ 직장인 자녀 생활비·용돈, 아무 문제 없을까?
2	무이자 금전대여	▶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증, “쓰기만 하면 세금 0원”일까?
3	부모님 카드	▶ 자녀에게 건넨 부모 카드 “생활비”일까 “증여”일까?
4	상속세 신고	▶ 상속세 0원인데 신고를? “안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”
5	자금조달계획서	▶ 자금조달계획서, 그럴듯하게 쓰면 안 걸린다는 위험한 착각
6	부담부증여	▶ 전세 깐 아파트 ‘부담부증여’ 무조건 세금을 줄일까?
7	사전증여재산	▶ 임종 직전 증여 “미리 줬으니 상속재산에서 빠지겠지?”
8	축의금	▶ 축의금으로 신혼집 장만, “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?”
9	추정상속재산	▶ 상속 전 인출한 현금 “안 보이면 그만”일까?
10	부모님 생명보험	▶ 생명보험 계약자·수익자가 자녀라면 “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내줘도 상속세 0원”일까?

3 주요 구성 내용

□ 「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」은 주제별로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‘오해’로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‘진실’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.

【 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예시 ①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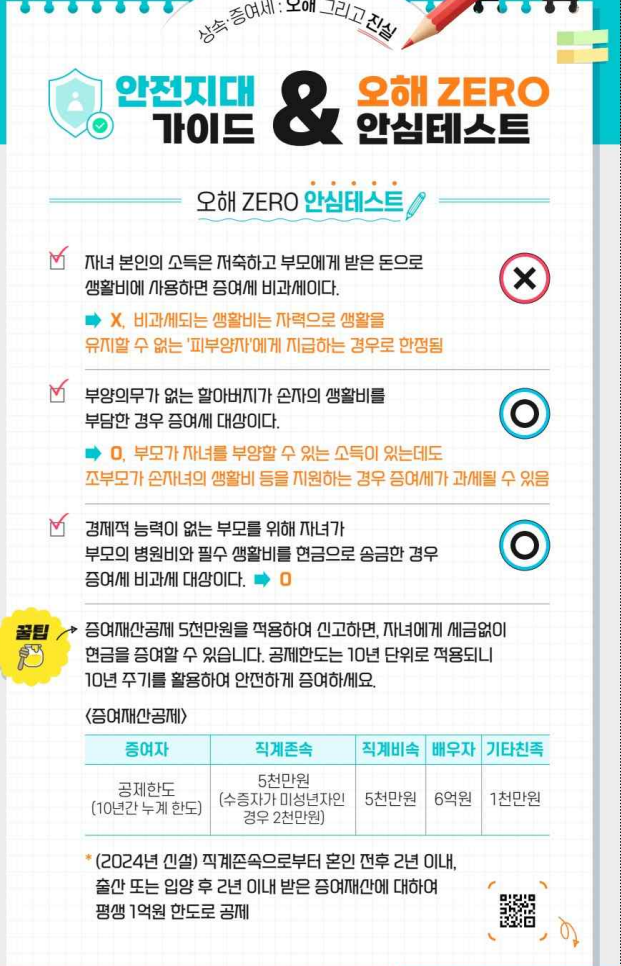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편</p> <h3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장인 자녀 생활비·용돈 아무 문제 없을까?</h3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해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편</p> <h3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세 민 아파트 '부담부증여' 무조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?</h3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해</p>
<p>직장 다니는 아들 생활비 보태주는 것도 증여라고요? 매달 100~200만원 정도는 당연히 부모가 주는 '용돈'이죠? 가족에게 현금 이체할 때 '생활비'로 메모해두면 증여세 비교세가 될까요?</p>	<p>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민 아파트를 넘겨주면, 그 채무만큼 빼고 증여세가 계산되니까 세금이 줄어드던데요? 채우는 자녀가 갚는다는 서류만 작성해두고, 나중에 부모가 슬쩍 갚아주면 완벽한 절세 아닌가요?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실</p> <p>직장인 자녀 통장에 꽂힌 생활비 송금,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!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실</p> <p>증여세는 줄여줄 수 있지만, 부모에게는 별도로 '양도소득세'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!</p>
<p>세법상 '비과세 생활비'의 전제 조건은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. 국세청은 '생활비'로 메모한 '형식'이 아닌 '실질'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합니다.</p>	<p>증여재산가액에 인수한 채무액이 차감되어 당장의 증여세는 줄여줄 수 있지만, 부모에게는 별도로 '양도소득세'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 ※ 부담부증여란?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함</p>

□ 또한 자료에는 납세자가 유의하여야 할 점을 안내한 ‘실무 포인트’와 ‘안전지대가이드’, OX 문제로 구성된 ‘오해 제로(ZERO) 안심테스트’를 함께 실어 납세자 스스로 판단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

【 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예시 ② 】

* 실무 Point * 실무포인트*

- 생활비 송금 유의사항:**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재산 구입 시 과세:**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,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·적금을 틀거나 주식,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안심테스트 가이드 & 오해 ZERO

오해 ZERO 안심테스트

- 자녀 본인의 소득은 저축하고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세이다. ❌
 - ➡ X, 비교세되는 생활비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'피부양자'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인정됨
-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대상이다. ⊙
 - ➡ O,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
-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와 필수 생활비를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. ⊙

꿀팁 →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면, 자녀에게 세금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. 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니 10년 주기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증여하세요.

(증여재산공제)


증여자	직계존속	직계비속	배우자	기타친족
공제한도 (10년간 누계 한도)	5천만원 (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)	5천만원	6억원	1천만원

* (2024년 신설)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,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생 1억원 한도로 공제

안전 기준 : 생활비 비과세 기준

- 대상:**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'소득이 없는' 가족에게 주는 금전이여야 합니다.
- 용도:**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식비,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**직접 지출**된 것을 말합니다.
- 수준:**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'적정 범위'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.

관련 소문 영상 연결 QR 코드



○ 「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」 자세한 PDF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*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.

* 접근경로 :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>> 국세신고안내 >> 상속·증여 안심 가이드

- 아울러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해 **단편 영상**(숏폼)도 함께 제작·배포한다.
-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단편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**5월 31일 1편**을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로 제공할 예정이다.

4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친숙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
-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	책임자	과 장	신상모 (044-204-3441)
		담당자	사무관	한청용 (044-204-3462)
<협조>	개인납세국 세정홍보과	책임자	과 장	권오흥 (044-204-3281)
		담당자	사무관	이일생 (044-204-3292)





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속·증여세

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



TOP 10

제1편



직장인 자녀 생활비 송금

제2편



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

제3편



자녀에게 건넨 부모 카드

제4편



상속세 0원 신고

제5편



자금조달계획서

제6편



전세 긴 아파트 부담부증여

제7편



임종 직전 서두른 증여

제8편



축의금으로 신혼집 장만

제9편



상속 전 인출한 현금

제10편



부모가 내 준 보험료

생활 속 세금 궁금증, 국세청이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!



「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」 공식 책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
www.nts.go.kr



단편 영상(숏폼)은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순차 공개 됩니다!

YouTube 국세청



제1편

직장인 자녀 생활비·용돈 아무 문제 없을까?

오해

3:45 / 5:00

직장 다니는 아들 생활비 보태주는 것도 증여라고요? 매달 100~200만원 정도는 당연히 부모가 주는 '용돈'이죠? 가족에게 현금 이체할 때 '생활비'로 메모해두면 증여세 비과세가 될까요?

진실

진실

직장인 자녀 통장에 꽃힌 생활비 송금,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!

상속·증여세법
세법 기본 통칙
국세청 상담 사례집

세법상 '비과세 생활비'의 전제 조건은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. 국세청은 '생활비'로 메모한 '형식'이 아닌 '실질'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력 능력을 확인합니다.

* 실무 Point 포인트 *

- 1 **생활비 송금 유의사항**: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2 **재산 구입 시 과세**: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,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·적금을 들거나 주식,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
상속·증여세 : 오해 그리고 진실



안전지대 가이드 & 오해 ZERO 안심테스트

안전 기준 : 생활비 **비과세** 기준

- 1 **대상** :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'소득이 없는' 가족에게 주는 금전이여야 합니다.
- 2 **용도** :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식비,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**직접 지출**된 것을 말합니다.
- 3 **수준** :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'**적정 범위**'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.



상속·증여세 : 오해 그리고 진실

안전지대 가이드 & 오해 ZERO 안심테스트

오해 ZERO 안심테스트

자녀 본인의 소득은 저축하고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세이다. X

➡ X, 부과세되는 생활비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'피부양자'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됨

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대상이다. O

➡ O,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


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와 필수 생활비를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부과세 대상이다. ➡ O O

꿀팁 →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면, 자녀에게 세금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. 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니 10년 주기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증여하세요.

<증여재산공제>

증여자	직계존속	직계비속	배우자	기타친족
공제한도 (10년간 누계 한도)	5천만원 (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)	5천만원	6억원	1천만원

* (2024년 신설)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,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생 1억원 한도로 공제



관련 숏폼 영상 연결 QR 코드

참고 4

국민 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

정보 습득 경로 및 신뢰도



상속·증여 정보 습득 1위는 '유튜브 및 SNS' (31%)

국세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.

응답자 99%가 "의구심 느낀다"?

유튜브/SNS 정보를 보고 '매우 자주(57%)' 또는 '가끔(42%)'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며 전격적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



국민이 원하는 팩트체크 TOP3



1위

생활비/용돈 계좌이체의 합정 (16%)

가족 간의 일상적인 송금이 풍여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.



2위

가족 간 차용증 작성과 이자의 진실 (14%)

차용증만 있으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루머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 입장을 궁금해합니다.



3위

부모님 카드(엄카) 사용의 위험성 (11%)

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로 고가 물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.



선호하는 방식 및 기대 효과

'1분 숏폼'과 '공식 가이드북' 선호도 팽팽 (각 38%)



핵심만 빠르게 파악하는 숏폼 영상과 상세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(PDF)에 대한 수요가 동일하게 높습니다.

응답자 97%, 국세청 팩트체크 가이드에 "도움 될 것"



매우 도움(75%) 및 도움(22%)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며, 신뢰할 수 있는 최종 정답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
참고 5

「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」 이용 방법

01.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'국세신고안내' 클릭



02. '상속·증여 안심 가이드' 클릭

알림·소식	국민소통	국세신고안내	국세정책/제도
보도자료 국민체감 성과 신문기사 모음 보도설명 자료 고시·공고·행정예고 공지사항 국세청 소식 국세청 동영상 모범·아름다운 납세자 국선대리인	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규제혁신 적극행정 납세자권익 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교인소득 · 부가가치세 · 사업장현황신고 · 원천세 · 연말정산 · 양도소득세 · 밑줄 찍,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·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(증여)세 필수사례 ·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· 상속·증여 안심 가이드 · 상속세 · 증여세 · 종합부동산세 · 세금납부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무조사 제도 사업자등록 안내 신종업종 세무 안내 근로·자녀장려금 전자(세금)계산서/현금영수증/신용카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전자송달 제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소득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과세청부 사채소유/비밀유지

03. 「상속·증여세」 오해 그리고 진실' 클릭

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the Korean Tax Authority.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'알림소식', '국민소득', '국세신고안내', '국세정책/제도', and '정보공개'. The left sidebar lists various tax-related topics under '국세신고안내'.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'상속·증여 안심 가이드' and contains a search bar and a table of documents.

번호	제목	작성자	등록일
3	「상속·증여세」 오해 그리고 진실	운영자	2026.05.31.
2	국세청-상속·증여 세공상시표	운영자	2024.05.04.
1	국세청-상속·증여 세공상시식	운영자	2023.04.28.